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 - 59호

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8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21일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2-2번지 외 1필지

나. 면 적: 13,406.60m²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: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난아)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37, 209호(잠원동,신사쇼핑센터)

4.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일 : 2024년 3월 18일

※ 주요 변경내용

- 자금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
- 2023.6.27.자 준공인가 결과를 반영한 단위세대 면적 및 대지지분
- 계산착오, 오기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서 기재사항 단순정정

5.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대지면적 : 13,406.60m²

2) 건축규모: 지하3층/지상35층, 아파트 3개동 330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			
	계	49.98m ²	59.99m ²	84.94m ²	84.92m ²	107.97m ²	118.97m ²
계	330	26	75	34	130	34	31
토지등소유자	199	-	39	12	91	27	30
보류시설	2	-	-	-	-	1	1
일반분양	98	6	25	22	39	6	-
임 대	31	20	11	-	-	-	-

※ 착오에 의한 공급대상 단위세대 전용면적 기재사항 정정(49.99m²→49.98m²)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(변경없음)

1) 신 설: 도로(352.8m²), 공원(1,000m²)

2) 폐 지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시기: 2020. 1 ~ 2020. 4.

6. 관계서류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당사자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(☎ 02-2155-7359) 및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02-536-3020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